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2. 조치일: 2019. 6. 26.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 5건

※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1) 임직원 성과평가 체계 관리 강화

(가) 행장 및 경영진(임원) 성과평가 체계 관리 강화

행장을 포함한 개별 임원별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상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행장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중 건전성 관련 지표는 1개 지표(고정이하여신비율)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중치가 적어 은행이 건전성 관리보다는 영업실적 달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부행장)의 성과평가지표에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준법감시업무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원의 성과평가지표를 수익성뿐만 아니라 건전성까지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설계하는 한편, 준법감시 담당 임원의 경우 업무목표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지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일부부서 직원 성과평가 체계 관리 강화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주요 업무인 총행의 합규부(준법감시부 역할), 검사부, 리스크관리부 등의 직원들도 전행의 수익성, 성장성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기 부서 직원의 성과평가지표는 은행의 재무 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대외발송 통계보고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모행에 통계자료 등 보고시 담당자가 해당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하고 상위 책임자의 확인을 위한 별도 결재절차 없이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어 대외발송 통계보고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모행을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일부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된 사례가 있으므로

대외발송 통계보고시 전산시스템을 자동화하여 수기 작성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내부 결재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내부통제 운영 및 체계 강화

(가) 내규 제·개정 등 내규 운영 강화

모행 「국외점포 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면 내규 제·개정시 주요 내규(여신, 리스크관리)에 대해서는 모행 소관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여타 내규에 대해서는 사후 1개월 이내 제·개정 내역을 모행 소관부서 앞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합규부는 관련 내규를 개정하면서 모행에 개정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는 등 동 내규 준수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금융사고 등 중대한 내부통제 사항에 대한 정의가 모행의 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합규 관련 규정 제·개정시 모행과 사전협의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모행의 금융사고 관련 내규 등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내부검사 운영 강화

내부검사 실시 후 검사부가 마련한 징계안이 인력자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검사위원회에는 사후에 개략적인 조치결과만이 보고되고 있어, 검사위원회의 내부검사 통할기능이 미흡하고 내부검사 업무의 독립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징계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사후에라도 상세한 검사 조치결과 등을 보고받는 등 내부검사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기업신용평가모형 적합성 검증절차 강화

2016년부터 (구)외환은행에서 개발한 기업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여신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금리, 한도 등을 결정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중국의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부도율 데이터 등이 신용평가모형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등 기업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적합성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유동성리스크관리 강화

자금조달의 상당부분을 예수금으로 조달하는 가운데 예수금 조달처가 일부 한국계 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중국 당국이 법상 규제비율로 도입 예정인 고유동성자산비율의 기준비율을 2018년중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므로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일일 유동성지표 관리 등 유동성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자산·부채 만기구조의 개선 등 종합적인 유동성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